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2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9. 4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서 스포츠데이에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료·사용료 감면율(100분의 50)은 국가유공자·의사상자 등 사회적 공로자 및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감면율에 준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, 시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, 100분의 30으로 감면율 조정을 제안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스포츠데이의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조정함
(안 제9조).
- 나. 스포츠데이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조정함
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프로구단의”을 “프로구단이 있는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호마목 본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프로구단의”을 “프로구단이 있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별표 3”을 “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	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9조(입장료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	1. 2.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</u> <u>지정한 날의 시립체육</u> <u>시설 이용자: 100분의</u> <u>50 감액. 다만, 시를</u> <u>연고로 하는 프로</u> <u>구단의 경기장은 제외</u> <u>한다.</u>	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</u> <u>지정한 날의 시립체육</u> <u>시설 이용자: 100분의</u> <u>30 감액. 다만, 시를</u> <u>연고로 하는 프로</u> <u>구단이 있는 경기장은</u> <u>제외한다.</u>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	4. 5. (개정안과 같음)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별표 2 제1호의 개인 연습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	1. ----- -----. -----	1. ----- -----. -----

중복되는 경우 감면
율이 가장 큰 사유
하나만을 적용한다.
가. ~ 라. (생 략)

<신 설>

- 바. (생 략)
2. 3. (생 략)
4. 관내 초·중·고
학교운동부 경기 및
훈련의 경우 별표 3의
전용사용료의 100
분의 50 감액

-----.

가. ~ 라. (현행과
같음)

마. 시장이 스포츠
데일로 지정한
날의 시립체육시설
이용자: 100분의
50 감액. 다만,
시를 연고로 하는
프로구단의 경기
장은 제외한다.

- 바. (현행과 같음)
2. 3. (현행과 같음)
4. 별표 3의 전용사용
료의 100분의 50
감액
가. 관내 초·중·고
학교운동부 경기
및 훈련
나. 시장이 지정한
스포츠데이 관련
경기·행사. 다만,
시를 연고로 하는
프로구단의 경기
장은 제외한다.

-----.

가. ~ 라. (개정안과
같음)

마. 시장이 스포츠
데일로 지정한
날의 시립체육시설
이용자: 100분의
30 감액. 다만,
시를 연고로 하는
프로구단이 있는
경기장은 제외
한다.

- 바. (개정안과 같음)
2. 3. (개정안과 같음)
4. 관내 초·중·고
학교운동부 경기 및
훈련의 경우 별표 3의
전용사용료의 100
분의 50 감액

5. 별표 3의 전용사용 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. ~ 바. (생 략) 사. (생 략)	5.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<신 설></u> 사. (현행과 같음)	5. ----- ----- 가. ~ 바. (개정안과 같음) <u>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 한다.</u> <u>아.</u> (개정안 사목과 같음)
---	--	---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, 시설별 안전관리·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
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제10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제10조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제3호, 제10조제1호
마목 및 제10조제4호의 각 규정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하여는 2026년 1월
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, 시설별 안전관리·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<u>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
4. 5. (생략)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	4. 5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

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
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
하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바. (생략)

2. ~ 4. (생략)

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
30 감액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사. (생략)

-----.

-----.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
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
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
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
경기장은 제외한다.

바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
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
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
경기장은 제외한다.

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